

 정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정동고등학교

<목 차>

제1장 총칙	3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3
제3장 생활지도의 범위	3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4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4
제3절 교내생활	9
제4절 교외생활	16
제5절 정보통신	17
제4장 학생회	18
제1절 학생회	18
제2절 학생회 정 · 부회장 선출	21
제5장 학생교육	24
제6장 징계	24
제7장 시상	33
제8장 훈육 및 훈계	34
제9장 생활규정 제정 · 개정 절차	40

전면개정 2024. 1. 25.

부분개정 2024. 12. .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정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1. 본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4호 . 제7호, 제8호 및 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규정은 정동고등학교 학칙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정동고등학교 학생에게 적용된다.

□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안전부장, 각 학년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생활교육안전기획 교사(간사), 해당 학급담임교사로 구성한다.
3. 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 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학생 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재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8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9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1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현장체험학습 질서 유지에 관련된 사항
5. 킥보드 등 전동기기 탑승과 관련된 사항
6. 재난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2조【조언】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상담】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상담의 일시 및 장소**

- 상담의 일시는 상담 당사자와 신청인의 유선 통화로 상호 필요한 시간과 날짜를 협의하여 정한다.
- 상담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사전에 논의하고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상담이 가능하나 어느 한쪽에서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담을 끝낼 수 있다.(이 경우 이후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다.)
- 상당 일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감 혹은 학교장이 상호 중재를 통해 일시를 선정한다.

- **상담의 방법**

- 상담 신청자가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한다.
- 상담 당사자가 상담에 학년부장, 학생부장, 교감, 교장 등 제3자의 참석을 원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담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외의 참석자가 참석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을 중단한 후 상호 의견 교류 후 일정을 잡아 진행한다.
- 상호 협의된 상담이더라도, 상담하려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상담을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
 - ✓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도구,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 교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
 - ✓ 교원 등에게 물리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 교원의 직무 의무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 교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질의·요구하는 경우
 - ✓ 상호 협의된 시간 및 방법을 벗어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 협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주의】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5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6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훈육】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2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4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제8장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지시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단, 물리적 제지는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실시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
 -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1) 1차지도
 - 가) 수업 반 복도에 위치
 - 나) 강당, 운동장인 경우
 - (1)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 (2) 교사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장소
 - (3) 해당 교사가 판단하여 지정한다.(예. 강당: 무대 위, 운동장: 등나무 정자, 운동장 외곽)
 - 2) 1차 지도에 불응(지정된 자리 이탈)시: 2차 지도 지정된 장소로 이동

- 가) 학년 교무실
 - 나) 상담실
 - 다) 1층 본 교무실 교감선생님 옆 테이블 또는 생활교육안전부장 선생님 옆 의자
- 3) 분리 위치는 교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구역
- 4) 학생 간의 물리적 다툼이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타학생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 즉시 2차 지도 가능
-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1) 방과 후 수업, 기타 특별활동 사건인 경우 '다)'에 따라 처리
 - 2) 자율학습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 가) 학생의 수업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 나) 점심시간인 경우 식사 이후
 - 다) 타 학생 영향이 거의 없는 장소로 지도 교사가 지정한 장소

- 분리 시 인계 담당자는 학년교무실 비수업자, 본교무실 비수업자, 생활교육안전부장, 교감 순으로 연락을 취하여 분리자를 인계 후 담당 교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분리 장소로 이동한다.
- 2차 분리된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시간으로 한다.(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분리 시간은 교과담당교사, 해당 학생담임, 생활교육안전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차 분리로 인정하여 학부모에게 학생을 인계할 수 있다.)
- 제3호로 2차 분리된 학생인 경우 '분리학생 조치현황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단,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리학생 조치현황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제6항 '다' 및 '라'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부모에게 인계 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 후 인계한다.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30조【소지품 검사】에 따라 실시한다.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라.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제30조제2항】

마. 분리 보관 절차

• 소지·사용 금지 물품

- 휴대폰 관련물품(태블릿, 스마트 워치, 에어팟, 유·무선 이어폰, 유·무선 헤드셋 등 관련 물품)
- 휴대폰은 제38조【통신기기 관리】에 따라 조치한다.
※ 단, 필요에 따라 교육활동에 방해 또는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학년부장과 담임들이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하에 학년별로 통신기기(전자기기)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휴대폰과 그 외의 물품

- 제14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 1회차 주의
 - ✓ 2회차 주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 3회차 주의: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3일)
 - ✓ 학부모 안내 후 분리 보관 해제
 - ✓ 동일 물품으로 2회 분리보관 시 7일 동안 분리 보관
 - ✓ 3회 분리보관 시 제2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분리보관 절차

- 분리 보관 사유를 알림
- 학년실 분리 보관함에 관리
-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3일 후 반환 의사를 알리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동일 물품으로 2회 분리보관 시 7일 동안 분리 보관
- 3회 분리보관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요청

- 물품을 분리 보관한 경우에는 ‘물품 분리 보관 신고서’ 및 ‘물품 분리 보관 확인서’를 작성한다.
- 물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안내하고 ‘물품 폐기 확인서’를 작성한다.
-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흡기류(공기류, 칼 등)등은 바로 폐기할 수 있다.

10. 교원은 제6항제‘다’·‘라’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훈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2조에 따른 조언, 제13조에 따른 상담, 제14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5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나. 성찰하는 글쓰기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라. 반성적 차원에서의 단시간 교내봉사(3시간 이내)

제17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교육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38조【통신기기 관리】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0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제85조 61항에 따라 조치)

제21조【이의 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교내생활

제22조【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시설이용 및 환경】

-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5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6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남녀 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항과 같다.

-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여가시간에는 행정실 또는 담당교사를 통해 학교 시설 사용 신청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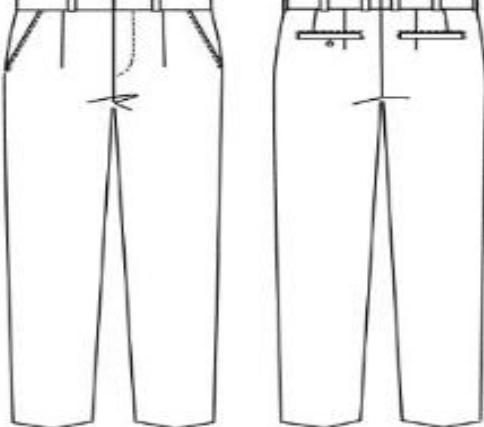
제29조【용의복장】

용의복장 규정은 반드시 교복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개정하여야 하며 용의복장 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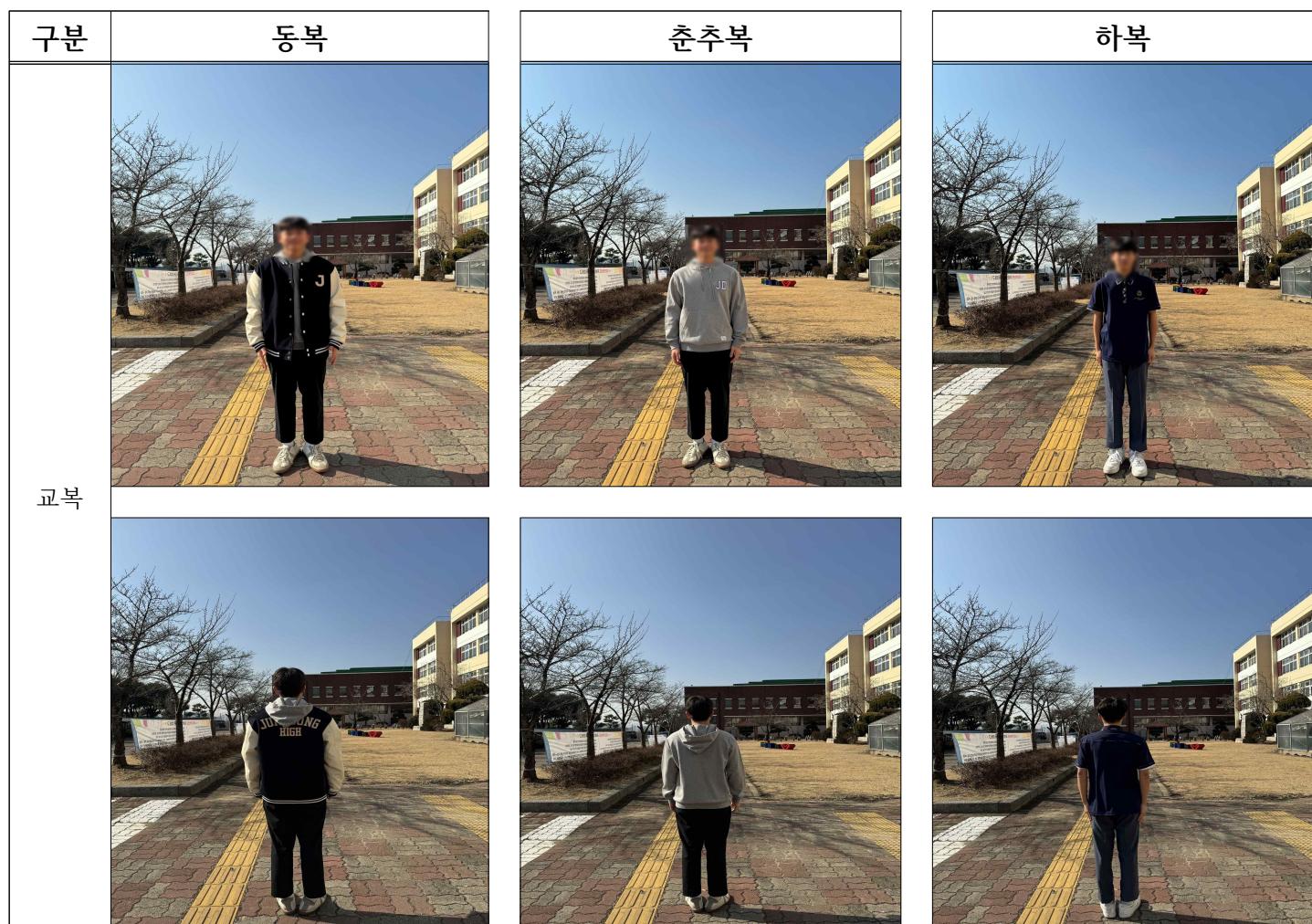
- 교복선정위원회의 역할
 - 교복(생활복), 체육복 디자인 적합성과 재질, 바느질 상태, A/S(의무기간 1년), 하자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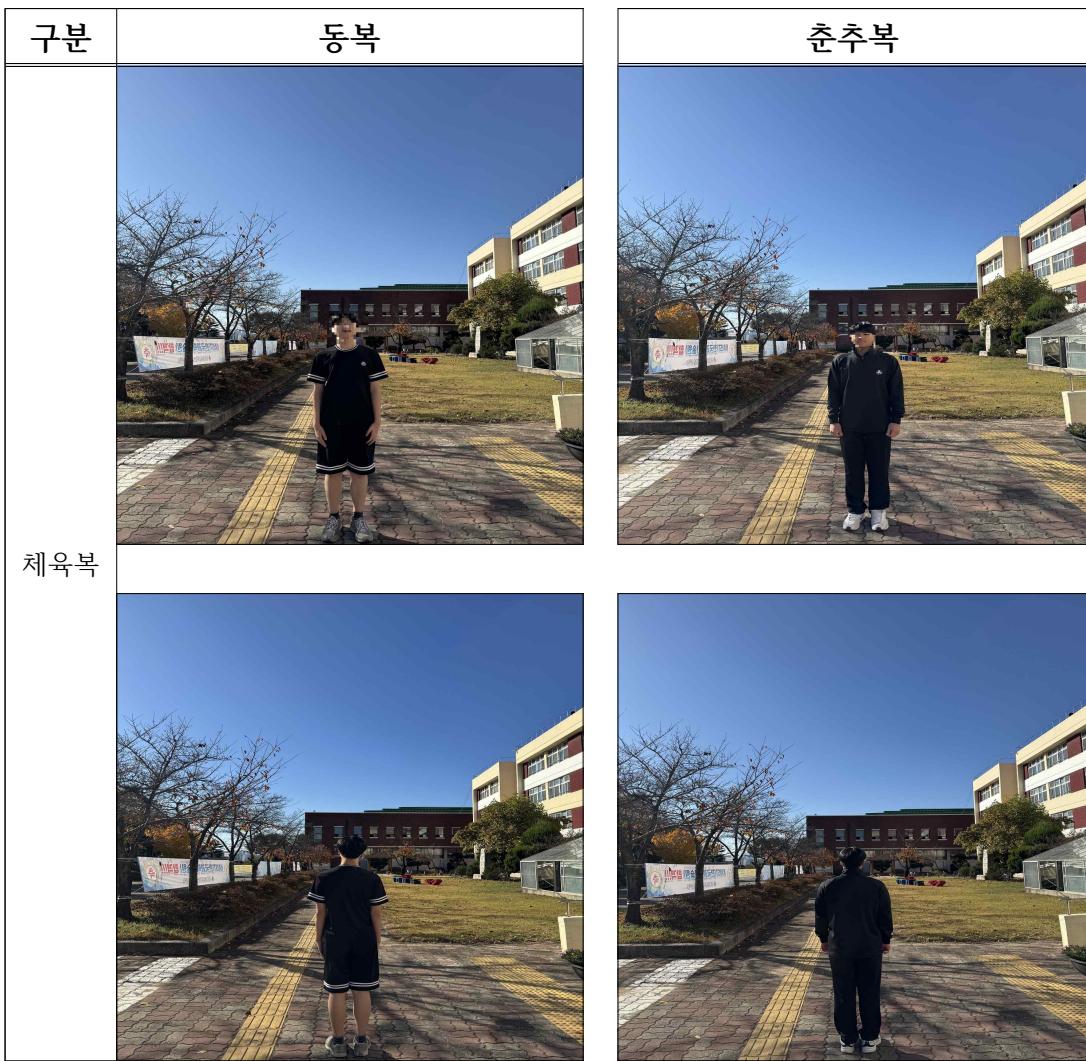
등 품질심사기준 설정 및 품질검사 실시

- 나. 교복(생활복), 체육복 착용 이후 품질, 품질 심사 기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매 결과 평가 실시
 - 다. 계약 체결 후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하여 좋은 품질의 교복이 제작될 수 있도록 감독(샘플검사, 원단검사 등에 참여)
 - 라. 필요시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실사 실시
2.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교원, 학부모, 학생 대표 등 7명 이상(학교별 위원회 구성 인원 비율은 자율 결정하되, 교원을 제외한 위원이 1/2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3.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생활복,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중에는 명찰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4.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방서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통하여 구입하여 변형을 주지 않는다.

구분	디자인	특징
동복	야구점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감: 곤색(면 60%, 폴리에스테르 40%) - 배색: 아이보리색가죽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입술 포켓/소매(아이보리색 가죽) - 넥/소매/밑단 흰색 2줄 시보리 • 부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크1: 착용시 왼쪽 가슴 - 마크2: 착용시 왼쪽 어깨 - 마크3: 뒷 넥 중앙 - 점퍼스냅: 흰색 무광
	후드티셔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감: 회색(면 80%, 폴리에스테르 20%)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후드 캠거루포켓 디자인 • 부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크: 착용시 왼쪽 가슴 - 아일렛 - 스트링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감: 진회색(폴리에스테르 63%, 레이온 34%, 폴리우레탄 3%)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터크 • 부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조절기

구분	디자인	특징
하복	생활복 생활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감: 곤색(폴리에스테르 100%) - 배색: 체크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카라 3버튼 디자인 - 쌍입술 포켓(체크) - 카라 1cm폭 배색(체크) - 소매/등판 3mm파이핑(체크) - 옆트임(체크) • 부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크: 포켓 1cm 위
	바지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감: 청회색(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 •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터크 • 부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조절기





5. 교복 착용 시 유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기온의 변동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착용 시기를 생활교육안전부에서 지정
 - 나. 동복 착용 시 화려하지 않은 색상의 패딩이나 파카 등의 외투 착용 가능(영하권의 추운 날씨)
 - 다. 등 · 하교 시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며 교내에서 동복 점퍼 털의는 자유롭게 허용
 - 라. 품위유지를 위해 등 · 하교시 반바지, 7부 바지 착용은 절대 금한다.
6. 생활복 착용 시 명찰은 지정한 위치에 달아야 한다.(명찰은 학년별로 지정된 색상 및 규격의 것을 단다.)
7. 실시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한다.(체육시간 등)
8. 신발(실외화)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해야 하며, 꺾어 신지 않도록 한다.
- 가. 교내 활동 전용 실내화 착용(교외에서 착용 금지)
 - 나. 슬리퍼, 플립플랍(쪼리), 크록스 착용 금지
9. 학생은 가방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고 고가품(명품)은 휴대할 수 없으며, 양어깨에 매는 백 팩 형태의 것으로 한다.
10. 머리는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가급적 스포츠형으로 단정하게 신체구조에 어울리게 한다.
 - 나. 앞머리는 수직으로 쓸어 내렸을 때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 다.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고 덮지 않아야 한다.
 - 라. 뒷머리는 옷깃(칼라)에 닿지 않아야 한다.(맥가이버 형, 꼽지 머리 금지)
 - 마. 염색 및 파마, 탈색, 붙임 머리 등 형태의 색의 변형 금지
 - 바. 헤어제품 사용 금지(무스, 젤, 스프레이 등)
 - 사. 머리띠 사용, 고무줄, 머리 끈 등 사용금지
 - 아. 학생 스스로 자율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칙에 따라 제재 가능
11. 피부보호를 위한 선크림을 제외한 화장, 손톱 기르기, 눈썹 밀기, 문신, 타투 등을 하는 행위는 금한다.
 12. 시력교정용 렌즈는 착용할 수 있으나 서클 렌즈, 컬러 렌즈 착용은 금지한다.
 13. 쌍커풀 테이프 및 쌍커풀 접착제는 사용을 금지한다.
 14. 기타 장신구는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 가. 목걸이, 반지, 귀걸이(투명한 형태 포함) 등의 장신구 착용 금지
 - 나. 교복 및 생활복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배지 등을 제외하고 부착하는 것은 불허한다.
 15. 교내에서 모자 착용은 금한다.

제30조【소지품 검사】

1. 학생증은 항상 소지하고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흥기류(공기류, 칼 등), 도박 관련 물품(화투, 카드)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3.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만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안전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5.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교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안전부장이 실시한다.)
7. 제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4,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학급 내 봉사활동】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때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을 한다.

제32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집회를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방과 후 및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3조【출결사항】

학생의 출결사항은 교무부 학생 출결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1.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2.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3.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 생활

제35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 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교육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6조【개인별 현장 체험학습】

교육청 지침 및 학교장 결재를 득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37조【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8조【통신기기 관리】

1. 교내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PC, 에어팟, 스마트 워치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단, 필요에 따라 교육활동에 방해 또는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학년부장과 담임들이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하에 학년별로 통신기기(전자기기)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주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4.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된 경우는 개별적으로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받아 소지하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5.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받는다.
6. 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별점을 부과하고 반드시 담임교사와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원인 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7. 휴대폰 수거에 고의로 불참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3일간, 2차 7일간 휴대폰을 담임교사가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8. 통신기기 관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반드시 사전 예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5,6,7호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장 학생회

제1절 학생회

제39조【목적】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 능력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정동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학생회”라 한다.)

제41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정동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유예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42조【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전반적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43조【대외 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44조【교육 기구】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5조【기능】

업무포털-업무관리시스템에서 결재를 취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을 위한 심신 수련 활동
 3. 학교의 전통,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계승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지역 사회 재난 시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가.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학교의 예산범위(학생회 활동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학년 1인, 2학년 1인, 1학년 1인)
3. 각 부의부장 및 차장 각 1인

제47조【부서조직】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학생회의 전반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 건전한 학생회 활동을 이끌어 가는 일을 총괄한다.

2. 문화부: 학예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체육부: 체육대회 및 전교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심신 수련 업무를 담당한다.
4. 바른생활부: 명랑하고 진취적인 교풍 진작과 학교 질서 지키기, 교통안전 캠페인, 학교폭력 캠페인 등 학생 자율 선도 업무를 담당한다.
5. 봉사부: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깨끗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자연보호 활동, 교내 폐휴지 수합 및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부: 학교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8조【임원의 임무】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계획·통괄한다.

제49조【임원 선출 및 자격】

1. 회장 및 부회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전교생 무기명 직선 투표에 의하여, 회장과 각 학년별 부회장 모두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득표자와 2위 득표자가 최종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3. 출마한 후보자가 1명 단독일 경우에는 찬성, 반대의 투표를 통해 해당 후보자의 선출 여부를 결정한다.
4. 당선 즉시 공고하고 내부결재를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단, 학생회장, 부회장은 학급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50조【임원의 임기】

1.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2. 임기 중이라도 사회봉사 혹은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가.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다. 대의원회의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라. 기타 운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생회장 또는 생활교육안전부의 요청으로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2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대의원회는 학생회 회장, 학생회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 각 부서별 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생회 회장이 된다.
2. 대의원회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나. 예산심의
 - 다.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라.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마.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 또는 안내
3.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
 - 나.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
 - 다.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 가능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생활교육안전부의 요구가 있을 때
 - 라.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마.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53조【학급회】

1. 학급회는 당해 학급 학생으로 구성한다
 - 가. 반장 1명
 - 나. 부반장 1명
 - 다. 각 부 부장(학생회 부서에 준함)
2. 학급회의 선출 및 자격은 각호와 같다
 - 가. 품행이 바르며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
 - 나. 선거일로부터 전입 기간이 90일 이상 지난학생(1학년 1학기 제외)
 - 다. 반장, 부반장 중복 지원은 불가
 - 라. 학생 임원과 겸임 불가
 - 마. 각 부 부장은 학급회에서 선출하여 담임이 임명
3. 임기는 학기별로 하며, 학기마다 학급 임원 선거 절차를 따른다.
4. 선출 방법은 각호와 같다.
 - 가. 학생회 임원 선거 절차에 준함

- 나. 후보자가 없을 시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임명 가능
 - 다. 1학기 학급 임원은 학생회 선거 전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라. 학급 임원이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면 즉시 재선거를 진행하여 학급 임원을 선출
5. 학급 임원(반장, 부반장)은 학기별 출석일의 2/3이상 활동했을 경우 내신에 반영되는 봉사점수 등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학기 중 임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활동기간과 관계없이 점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2절 학생회 정 · 부회장 선출

제54조【선출 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적용 범위】

학생회 정 · 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도 이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교육 하에 선출한다.

제56조【정족수】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1명(3학년 1명, 2학년 1명, 1학년 1명)으로 한다.

제57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2.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의 학생
3. 3개월(90일)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제58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 공고일 때 현재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3월~4월 경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생활교육안전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1,2,3학년 학급반장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가. 선거일 공고

- 나.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다.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라. 선거운동에 관한 일
 - 마.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 바.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사.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4.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5.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60조【입후보자 등록】

1. 입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각호의 내용을 별첨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가.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나. 추천서 1부(교사용, 학생추천용)
 - 다. 선거유세 벽보 5부
2. 회장과 부회장 모두 최소 30명 이상의 학생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등록 무효 및 사퇴】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퇴신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각항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입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급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2. 아침 등교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선거운동원신고서에 등록된 명단의 인원들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다.
2. 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교내 방송으로 1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 발표는 기호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63조【자격박탈】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1.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2.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3.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64조【후보자 벽보】

1. 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4절지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3.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65조【투표】

투표는 각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투표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를 학급별로 지정하고,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및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2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필요시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입장 하에 전자투표로도 실시할 수 있다.
3.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4.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명부의 성명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66조【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67조【개표】

1. 개표 장소는 본교 학생자치회의실로 한다.
2. 개표 사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에 기재하며, 투표지를 포장하여 보관한다.

제68조【무효표】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2.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정·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 한 것

제69조【당선인】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각 부문 과반수 이상 참여시 그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2. 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부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후 당선인 명단을 생활교육안전부에 제출하고, 학교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가. 당선자가 없을 때(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기권 또는 실시 하지 않았을 경우 포함)
 - 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 다. 동일 득표수가 나왔을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1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2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일 이내에 생활교육안전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생활교육안전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장 학생교육

제73조【안전교육】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2.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3.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통지도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각종 체험학습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74조【진로교육】

진로교육은 다음 각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한다.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3. 학교계획에 따라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4. 전문가를 초청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5. 진로상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 훈련)을 각 진로상담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75조【무단결석·가출 예방교육】

1. 무단결석 예방교육 및 가출 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2.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3.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교육한다.
4.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교육한다.
5.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교육한다.

제76조【생명존중교육】

1.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2.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교육한다.

제77조【음주·흡연 및 약물(마약포함) 오·남용 예방교육】

1. 훈화, 관련교리를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마약포함) 오·남용 예방에 노력한다.
2. 음주·흡연 및 약물(마약포함) 오·남용 예방자료의 상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3.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가정과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4. 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마약포함)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치료를 권장한다.

제78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1.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3.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성고충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4. 관찰·상담 등으로 성폭력예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교육한다.

제79조【교외생활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 제6장 징계

제80조【학생의 징계 및 징계원칙】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징계원칙은 다음 각항과 같이 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81조【기구 및 운영】

1. 학생들의 선도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구. 선도위원회, 이하 생략)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안전부장, 진로상담부장, 각 학년 부장, 생활교육안전기획(간사)로 구성한다.
3. 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징계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82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 학생 대상 교육위원회 징계일 경우 다음 항과 같다.

1. 일반학생 대상 교육위원회일 때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이상의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2. 장애 학생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제8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사 및 수행평가 등의 평가 기간을 제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장이 최종 판단하여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 조치 이행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과편지 작성은 학교내의 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시간에 대한 상한 제한은 업으나 1일 4시간 이내, 조치별 최대 40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 부과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사회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시간에 대한 상한 제한은 없으나 1일 6시간 이내 조치별 3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부과 시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위탁 기관에서 실시한다. 사회 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해당 징계 조치 이행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이수증, 확인서 제출 시)
사회 봉사 조치 이행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특별교육이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시간에 대한 상한 제한은 없으나 조치별 최대 25시간 이내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각 학교 및 위탁기관 등의 실정에 따라 해당 부과 시간과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되 고사 및 수행평가 등의 평가 기간을 제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해당 징계 조치 이행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이수증, 확인서 제출 시)
 4. 출석정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거나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생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적으로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은 아래에 해당 하는 학생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 나. '제83조1항~4항'까지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 다.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적이 잣은 경우
 - 마.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 * 모든 사안의 징계 조치 과정 및 시행 시 교원은 보호자와 상담, 학생과 학생생활교육(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을 통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병행 할 수 있다.

제84조【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제85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각항과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는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가. 학교 환경 미화 작업
- 나. 교사들의 업무보조
- 다. 교재·교구 정비
- 라.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 마. 캠페인 활동

2. 그 외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퇴학은 제83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83조제4항, 제83조제5항을 참고한다.

제86조【학교 징계 기준】

구분	항	내용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예절준법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2	용모가 학생답지 못한 학생	→	→	→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	
	4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	→	→	→	→
	5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7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8	학교의 공식적인 단체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한 학생	→				
	9	수업준비, 청소, 주변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	
	10	교구 및 시설을 파손한 학생	→	→	→		
	11	징계조치에 불응한 학생		→	→	→	→
	12	경찰서에 연행 된 후 훈방된 학생	→	→	→	→	
	13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14	인장, 제증명, 돈, 신분증 등을 위조한 학생	→	→	→		
	15	성행이 불량하여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16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1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18	남의 물건을 훔친 학생	→	→	→	→	
	19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하거나 휴대폰 수거를 고의로 3차 거부한 학생	→	→	→	→	

구분	항	내용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수업태도	20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2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2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23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24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25	집단 응시거부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26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절취한 학생	→	→	→	→	→
	27	과제를 타인에게 대신 수행할 것을 강요 · 수행하게 한 학생	→	→	→	→	
근태	28	무단외출,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한 학생	→	→	→		
	29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30	무단가출하여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31	상습적으로 미인정 결석을 하는 학생	→	→	→	→	→
	32	고의로 다른 학생의 등교를 방해한 학생	→	→	→		
	33	도박, 사기, 불법 상행위 등을 한 학생	→	→	→	→	→
	34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35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36	불량서적, 음란물을 소지한 학생	→	→	→	→	
	37	불량비디오 및 녹화 영상을 시청 · 유포한 학생	→	→	→	→	→
	38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학교폭력 관련 사건 포함)	→	→	→	→	→
	39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문란하다고 판단된 학생	→	→	→	→	
금품	40	공과금을 유용한 학생	→	→	→		
	41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	→	→	
	42	금품을 갈취, 사취한 학생	→	→	→	→	
	43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집단행위	44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45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46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	→	→	
	47	동맹휴학을 선동, 주도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구분	항	내용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흡연·음주·약물	48	교내외에서 학생이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이 항목의 징계는 제87조【흡연·음주·약물 징계】 의 특별규정에 따른다				
	49	흡연 또는 음주 현장에 같이 있었거나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은 학생					
	50	담배, 라이터 등 흡연과 관련된 물품을 소지하였을 경우					
	51	교내외에서 음주 및 유해성 약물을 복용한 상황이 발각되었을 경우					
	52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마약류를 소지하였을 경우					
	53	음주 혹은 약물복용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					
기타	54	교권 침해 행위를 포함한 욕설(사이버포함), 뒷담화, 명예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	→	→	→
	55	인터넷 상에서 불법 행위를 한 학생	→	→	→	→	
	56	타인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등 이동장치를 불법 사용한 학생	→	→	→	→	
	57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	
	58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침입하거나 침입하여 해당 장소의 시설물을 훼손한 학생	→	→	→	→	
	59	국가 전염병 재난 시 학교 교육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분비물을 고의 혹은 장난으로 옮기는 경우	→	→	→	→	
	60	신체의 피부를 뚫어 장신구를 삽입하는 피어싱, 귀고리를 한 경우	→	→	→	→	
	61	시계를 제외한 반지, 팔찌, 목걸이, 머리띠 등 악세서리를 하거나 문신을 한 경우	→	→	→	→	
	62	지속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지시 사항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한 경우	→	→	→	→	→
	63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등·하교하는 경우(면허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 명예 실추 및 학생 신분에 맞지 않으므로 불허함)	→	→	→	→	
	64	무면허 운전을 한 학생(자동차, 오토바이 등)	→	→	→	→	
	65	학생생활평점제 누적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	→	→	→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 퇴학 순으로 낮은 단계부터 단계별로 적용해야 교육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1항에 따라 징계는 병과할 수 없으며, 한 건의 사안에 대해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만 부과할 수 있다.

* 징계 기준 내용에 따른 조치에 대해 '퇴학' 조치까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학생의 반성 정도, 재발 유무 등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 조치 처분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 ※ 교육 기관별 사정에 따라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은 서로 대체 될 수 있다.
- ※ 징계 조치가 내려진 후 불이행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높은 단계의 징계로 조치 한다.

제87조【흡연 · 음주 · 약물 징계】

흡연 · 음주 · 약물로 인한 징계 사안 발생 시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 1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부모 소환(교내봉사 10시간)
- 2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부모 소환(교내봉사 20시간+금연프로그램 참가 권유)
- 3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부모 소환(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금연프로그램 참가 권유)
- 4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부모 소환(출석정지+금연프로그램 참가 권유)
- 5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부모 소환(퇴학)

제88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9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90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91조【통보 및 재심 안내】

-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행정절차법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92조【징계 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다. 단,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3조【징계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94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 제7장 시장

제95조【시행】

학생에게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교직원 회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6조【종류 및 선발기준】

1.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을 실시한다.
 - 가. 교과목 우수상: 당해 학기 교과목 성적의 석차 상위 5% 이내 해당자로 한다. 상위 5% 이내 해당자가 없는 교과목의 경우 성적의 석차 최상위자 1명으로 한다. 단, 공동교육과정, 소인수과목은 시상하지 않는다.
2. 결석과 지각이 없는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포상을 실시한다.
 - 가. 1년 개근상 : 당해 학년 간 결석.지각.조퇴가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단, 1년 개근상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나. 3년 개근상: 3개년간 결석 · 지각 · 조퇴 · 결과가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다. 3년 정근상: 3개년간 결석이 없고, 지각 · 조퇴 · 결과가 2회 이하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3.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포상을 실시한다.
 - 가. 모범학생 표창: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생활이 모범적이며 지도력이 뛰어난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혹은 부장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 나. 선행상: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혹은 부장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 다.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혹은 부장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 라.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혹은 부장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 마. 노력상: 열심히 노력하여 현저한 학업성적 향상을 기록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될 만한 경우 담임교사 혹은 부장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4. 특별활동 부문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담임교사 혹은 부장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포상을 실시한다.
 - 가. 예능상: 음악.미술.과학.웅변 등의 분야에 재능이 있어 교내.외 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고양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 나. 기능상: 컴퓨터 경진대회, 기타 기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한다.
 - 다. 체육상: 체육 분야에 재능이 있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고양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 라. 문학상: 독서에 취미가 있어 많은 책을 읽거나 각종 글짓기, 독후감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한다.
5. 학생이 졸업 시 학교에서 수여하는 특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재단이상장상: 졸업 시 집중 이수 과정별로 순서를 정하고 3개 학년 전체 교과목 우수상이 가장 많은 각 1명에게 수여한다.
 - 나. 동창회장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상, 학부모 회장상, 정암장학재단이사장상 : 각 이수 과정별 차 순위로 집중 이수 과정별로 순서대로 수여하되 과정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다. 기타 외부 기관에서 의뢰한 상(표창장)의 경우 : 위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한 차 순위 학생에게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순서대로 수여한다. 단, 대학교총장상 등 대학에서 의뢰한 상장(표창장)의 경우 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 중에 성적순위로 시상한다.

라. 공로상: 당해 학년도 졸업반 학생으로서 재학 중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학생 및 학생회 활동과 특별활동 분야에서 활동한 공적이 뚜렷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수여한다.

마. 위에 열거한 수상 대상 학생의 전체 교과목 우수상의 수가 같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적으로 수여한다.

- 1) 3학년 2학기의 교과목 우수상의 교과목 수가 많은 학생
- 2) 3학년 1학기의 교과목 우수상의 교과목 수가 많은 학생
- 3) 이상으로도 동순위일 경우는 교육 과정 과목 순으로 하되 3학년, 2학년, 1학년의 순으로 한다.

제97조【수상자의 조정】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6조【종류 및 선발기준】 외에 포상 종류 및 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8조【행사 및 경연대회 포상】

학교장은 교내 행사 및 각종 경연대회에서 실적을 거양한 학생 및 학급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99조【부상】

포상은 상장의 수여 혹은 상장과 부상의 수여로 한다.

제100조【포상의 제외】

학교장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품행에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장 훈육 및 훈계

제101조【목적】

1. 학생 교육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으로 인해 훈육·훈계의 교육 내용과 절차를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처벌 위주의 징계 교육을 하기 전에 선도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 능력을 배양한다.
4.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102조【훈육 및 훈계 방침】

1. 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 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2.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3.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4. 훈육, 훈계의 교육방법은 제1절 훈육, 훈계와 제2절 생활평점제(행동발달사항 누가기록)에 바탕을 둔다.

제1절 훈육 및 훈계

제103조【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

1. 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은 정신을 맑게 하는 정신 교육별,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습 교육별, 반성하는 성찰 교육별로 정한다.
2. 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할 시에는 학생들의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훈육 및 훈계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교육받은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04조【훈육 및 훈계 교육 내용】

1. 정신 교육별
2. 학습 교육별
3. 성찰 교육별

제105조【정신 교육별】

1. 교실 뒤편에 서서 학습 참여
2. 제자리에 서서 학습 참여
3. 화장실에서 세수 후 본인이 정신이 맑게 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서서 학습 참여
4. 스탠딩 책상에서 학습 참여
5. 문제 행동에 따라 학생의 특성 상태를 고려하고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목표 수치 설정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의 기초 체력 종목인 팔굽혀펴기, 왕복 오래 달리기 등 기초 동작을 실시 함으로서 체력 단련 및 정신 교육 강화
6. 운동장 걷기 또는 바른자세를 이용한 단전호흡을 실시하여 감정 억제 및 정신 수양

제106조【학습 교육별】

1. 학습지 풀기
2. 해당 교과 요점 정리
3.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적기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5. 시사 스크랩하기
6. 교훈이 되는 구절 쓰기

제107조【성찰 교육별】

1. 자기 성찰문 작성하기
2. 책상에 앉아 자기 성찰하고 하기

3. 선생님께 편지 쓰기
4. 친구에게 편지 쓰기

제2절 학생생활평점제(행동발달사항 누가기록)

제108조【목적】

체벌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한 건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제109조【방침】

1. 본교 학생 생활 규정 중 ‘훈육 및 훈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할 때 체벌을 대신하여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 엄정하게 적용한다.
2. 교육 점수 부과보다는 학생 교육에 역점을 둔다.
3. 교육 점수 부과는 사안의 심각성 혹은 교사의 요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제110조【상 · 벌점 규정위원회】

아래와 같이 상 · 벌점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 교감
2. 위원: 생활교육안전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진로상담부장, 각 학년부장, 생활교육안전기획
3. 위원장은 다수교사의 요청을 통한 규정 개정이 요구될 시, 최소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규정 개정은 전체위원 2/3의 발의로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5.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11조【운영방법】

1. 상점과 벌점 발부는 모든 교사가 참여할 수 있고 학교교육포털 ‘리로스쿨’(이하 리로스쿨)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부여한다.
2. 상점과 벌점은 제110조【상점 목록】, 제111조【벌점 목록】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3. 상점은 누계 점수를 근거로 모범상 등 각종 표창 및 장학생 선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4. 벌점은 제112조【벌점에 따른 학생 지도】에 따라 생활교육안전부에서 학생을 지도한다.
5. 제110조【상점 목록】과 제111조【벌점 목록】의 항목 외에 상점 혹은 벌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생활교육안전부장과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판단에 따라 부여한다.
6. 상점과 벌점은 상쇄 할 수 없다.
 - 가. 상점과 벌점의 상쇄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점과 벌점은 별개로 해석한다.
 - 나. 제112조【벌점에 따른 학생 지도】에 따라 징계를 받은 후에도 누적 벌점은 지워지지 않으며 계속 누적된다.
7. 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켜 교육하여야 한다.

8. 상점 혹은 별점 부여한 교사는 해당학생에게 ‘리로스쿨’을 통해서 확인 할 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
9. 상점 혹은 별점 부여한 교사는 해당학생의 담임에게도 사실을 통보한다.
9. 정당한 이유 없이 별점 부과에 불응하고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은 누적 점수와 관계 없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
10.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분기별 누적 점수를 종합하여 각 학년의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제112조【상점 목록】

대분류	중분류	항	내 용	점수
상점	준법	1	학교 내 흡연, 폭행, 따돌림 학생 신고	2
		2	선행 및 미담 사례가 남다른 학생	2
	수상 및 봉사	3	껌 또는 낙서를 제거하는 학생	2
		4	청소를 솔선해서 하는 학생	2
		5	쓰레기장 분리수거 하는 학생	2
		6	모범, 노력, 효행, 선행, 봉사 등 각종 표창 부문	3
		7	지역(대구광역시) 규모 이내의 모범, 노력, 효행, 선행, 봉사 등 각종 교외 표창	5
		8	전국 규모의 모범, 노력, 효행, 선행, 봉사 등 각종 교외 표창	7
		9	봉사활동확인서 제출한 학생(봉사활동 시간만큼 상점으로 대체)	•
	각종 행사	10	각종 캠페인 활동(1시간)	2
		11	교내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반 1위	3
		12	교내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반 2위	2
		13	교내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반 3위	1
		14	교내 체육대회에서 응원상을 수상한 반	2
		15	교내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입상한 학생 1위	3
		16	교내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입상한 학생 2위	2
		17	교내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입상한 학생 3위	1
		18	교외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입상한 학생 1위	3
		19	교외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입상한 학생 2위	2
		20	교외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입상한 학생 3위	1
	학습 태도	21	수업 태도가 타의 모범 / 수업 중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	2
	기타	22	지도교사의 판단에 따라 상점 항목에 없어도 상점을 부여할 수 있음.	1

제113조【별점 목록】

대분류	중분류	항	내용	점수
별점	등 · 하교	1	교복 미착용, 슬리퍼 착용(크록스 포함)	-1
		2	지각	-1
	학습 태도	3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에 늦게 들어온 경우	-1
		4	수업 준비를 게을리 한 경우	-2
		5	엎드려 잠을 자는 경우	-2
		6	만화, 잡지 등 수업과는 무관한 내용을 본 경우	-2
		7	수업 시간, 자율학습시간에 교육/학습목적 이외의 전자기기 사용(휴대폰, 패드, 탑 등)	-2
		8	태만한 학습 태도로 학습 분위기를 해친 경우	-2
		9	자율학습 중 임의로 하교한 학생	-2
		10	수업 중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경우	-5
		11	분필이나 공적인 교구로 장난을 한 경우	-1
	생활 질서	12	개인 사물을 교실에 흘뜨리는 경우	-1
		13	교내외에서 휴지나 오물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	-1
		14	벽이나 화장실 등에 낙서를 한 경우/교사용 화장실 사용	-2
		15	실내에서 껌을 씹거나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2
		16	실내에서 공놀이 또는 고성으로 실내 정숙을 해치는 경우	-2
		17	교문을 통하지 않고 등 · 하교 하는 경우	-2
		18	급식질서위반 및 불결하게 음식물을 처리한 경우	-2
		19	종례 이전에 무단으로 하교한 경우	-2
		20	사행성 놀이를 하거나 조장한 경우	-2
		21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무단횡단, 신호무시 등)	-2
		22	타 학급에 임의로 출입하고 소란을 피운 경우(이동수업 제외)	-2
		23	지참하지 말아야 할 금기서적,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2
		24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	-2
		25	유언비어 유포, 교사 및 학생의 위신을 저해 손상시킨 행위	-2
		26	강당에서 하는 학교행사 및 전체조회 시 슬리퍼로 참여하는 학생	-2

대분류	중분류	항	내 용	점수
별점	용모 복장	27	복장 및 용의 규정을 어긴 경우	-1
		28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1
		29	두발 규정을 어기는 경우	-2
		30	파마, 염색 및 귀고리를 한 경우	-2
	기본 예절	31	인사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32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33	선・후배 간에 상호 존중의 예를 지키지 않은 경우	-3
		34	선배가 지도의 구실로 후배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35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손한 말을 한 경우	-5
		3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손한 행동을 한 경우	-10
	학교 규정	37	학교 행사에 의도적으로 불참한 학생	-1
		38	승용차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학교 앞까지 등교하는 학생(긴급, 환자 제외)	-1
		39	지각을 하는 학생(교문 단속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	-2
		40	무단결석,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한 학생(일과 및 자율학습 포함)	-2
		41	자전거 등교시 안전모 미착용	-2
		42	보호자 동행 없이 성인 노래방, 비디오방을 출입한 학생	-3
		43	성인용 만화, 영화, 비디오 등을 시청한 학생	-3
		44	일상의 상투적인 허위 사실, 허위 진술, 거짓말을 한 학생	-3
		45	일과 중 휴대폰을 내지 않은 학생	-3
		46	학교기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학생	-5
		47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교육적 행동을 한 학생	-5
		48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뒷자석 승차도 동일)	-5
		49	수업 중 휴대폰을 이용하는 학생	-5
		50	친구와 말타툼이나 싸움을 한 경우	-5
		51	흡연, 음주 도박을 하는 학생(담배, 라이터 소지학생도 동일)	-10
		52	폭력을 행사한 학생	-10
		53	범법행위로 경찰에 연행 된 후 훈방된 학생	-10
		5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도와 준 학생	-10
		55	외부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10

대분류	중분류	항	내용	점수
별점	학교 규정	56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20
		57	집단 패싸움을 한 학생	-20
		58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	-20
		59	불량 서클에 가입하거나 추종한 학생	-20
		60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절도를 한 학생	-20

제114조【별점에 따른 학생 지도】

단계	누적 점수	담당	지도 방법	비고
1단계	10점	담임교사 생활교육안전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결과 조치 사항 이행	3개년 간에 걸쳐 누적 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 퇴학 조치
2단계	20점			
3단계	30점			
4단계	40점			
5단계	50점			

□ 제9장 생활규정 제정 · 개정 절차

제115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6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17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교육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18조【위원회 운영】

-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학생회 대표 3인, 학부모 대표 3인, 교직원 대표 3인으로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9조【개정안 발의】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의견 수렴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 나.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 다.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설문조사 등
3.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1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2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